

제98호(2014. 11. 13.)

#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

어명근 이병훈 정대회



1. 한·중 FTA 추진 경과 .....	1
2.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의 주요 내용 .....	3
3. 한·중 FTA 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	9

감 수	박성재	선임연구위원	02-3299-4238	seongjae@krei.re.kr
내용 문의	정대희	전문연구원	02-3299-4297	dhchung@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2-3299-4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한·중 FTA가 정부 간 공식협상 2년 6개월 만에 타결되었음
  - 한·중 양국은 단계별 협상구조에 합의하고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13년 9월 7차 협상에서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타결 하면서 전체 상품을 일반품목군(10년 이내 관세철폐)과 민감품목군(20년 이내 관세철폐), 초민감품목군(양허제외, 부분감축, TRQ)으로 구분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후 2014년 11월 14차 협상을 통해 품목별 협상인 2단계 협상에 합의함으로써 FTA 협상을 타결하였음
- 우리나라는 전체 상품의 92.1%, 수입액 기준으로는 91.2%를 자유화하였으며 중국은 품목의 90.7%, 수입액의 85%를 자유화하였음
- 농축산물은 전체 품목 1,611개의 64%, 수입액 기준 42%를 자유화하여 20년 이내 관세철폐하며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비율은 34%임.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초민감품목 581개 가운데 548개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7개를 저율관세할당량 (TRQ) 조건부 현행관세율 유지, 26개를 부분감축하기로 하였음
  - 부분감축은 1년 철폐가 김치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등이며 김치는 현행 20%를 19.8%로 0.2% 포인트 감축하고 나머지는 10%씩 감축하게 됨. 나머지는 5년간 10% 감축이 8개, 10년간 130%로 감축이 15개임
  - 민감품목 441개는 15년간 철폐 154개와 20년 철폐 287개로 구성되며 나머지 일반품목은 즉시 철폐 216개와 5년간 철폐 373개임
- 이번에 타결된 한·중 FTA 협정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거대경제권인 미국, EU, 일본 중 어느 나라도 체결하지 못한 중국과의 FTA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음
  - 특히 협상 타결 전 가장 우려했던 농업이 대폭적인 양허제외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농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율관세할당량을 제공하거나 관세 부분감축 대상인 품목들의 경우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종합적인 국내대책이 필요함
  - 특히 발작물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농업인들도 한·중 FTA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정부 대책에 호응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 제고를 위해 협업할 필요가 있음



## 1. 한·중 FTA 추진 경과

### □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양국 연구기관 간 민간 공동연구를 거쳐 공동연구보고서(Joint Report) 발표

- 양국 간 FTA 체결로 모든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국내총생산(GDP)이 한국 3.1~3.2%, 중국 0.6% 증가하며 소비자 후생은 한국이 약 3.0%, 중국은 0.6% 증가 전망
  - 한국의 농수산업 생산은 14.2~14.7% 감소 추정

### □ 2007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 수행하고 양국의 입장을 병기한 공동연구보고서 채택

- 2008년 6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 본 회의 5회와 농업전문가 회의 3회 개최하였으나 주요 쟁점 합의에 실패
  - 한국은 농어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민감품목의 적절한 보호방안을 보고서에 명시할 것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양국 농업이 상호보완 관계이므로 무역을 통해 상생 가능하다고 민감성 보호방안 명시에 반대
- 2010년 5월, 2년여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양국 정상 간 협의를 거쳐 ‘민감분야 보호에 대해 정부 간 사전협의’ 할 것을 조건으로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 채택
  - 정부 간 공식협상 개시 결정 전, 민감성 처리방안에 대한 상호이해 (mutual understanding)와 합의 확립(ways and means for consensus)을 위하여 양측 공식 대표단 간의 추가적인 의견 교환 기회 마련

### □ 2012년 5월까지 정부 간 실무협의 진행 후 한국의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관련 절차 이행을 거쳐 정부 간 공식협상 추진 합의

- 한·중 FTA 공청회(2012년 2월 24일)를 통해 농업부문의 민감성 고려한 점진적 관세 철폐 제안
- 대외경제장관회의(2012년 4월 16일)에서 한·중 FTA 추진 의결

“

산·관·학 공동연구  
정부 간 사전협의  
거쳐 종료

”

“

단계별 협상구조로  
양국 입장 조율

”

□ **한중 통상장관 FTA 협상 개시 선언(2012. 5. 2.)**

- 단계별 협상 구조 채택: 민감품목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 조율
  - 1단계 모델리티 협상(협상의 기본지침): 상품분야의 민감품목 범위와 관세철폐방식 협의
  - 2단계 본 협상: 1단계 협상 완전 타결 후 개별 품목별 개방 수준과 방식, 각 분야별 협정문 등에 대한 전면적 협의

□ **한중 FTA 1단계 협상(2012. 5.~2013. 9.) 결과**

- 상품분야: 품목군 정의(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군)
  - 일반품목군: 10년 이내 관세 철폐
  - 민감품목군: 10년 이상 20년 이내 관세 철폐
  -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TRQ, 부분 인하, 계절관세 등
- 자유화 수준(20년 내 관세 철폐): 전체 품목의 90%(수입액의 85%) 이상
  - 초민감품목은 품목(세번 기준) 수의 10% 이내, 수입액의 15% 이내
- 2013년 11월 8차 협상부터 2단계 협상 시작

□ **한중 FTA 2단계 협상(2013. 11.~2014. 11.) 타결**

-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동식물 검역 등 22개 장(章)으로 세분하고 분야별 협상을 거쳐 최종 양허안 합의
  - 농산물은 자유화(발효 후 20년 이내 철폐) 비율 64%로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 낮은 수준

## 2.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의 주요 내용

### 2.1. 양허안 개요

- 양허 대상은 2012년 한국표준품목분류(HSK)상 농축산물 1,611개 세번(tariff-line)
  - 우리나라 표준품목분류(HSK)에 따른 전체 품목 12,232개 가운데 식품을 포함한 농산물은 13.2%인 1,611개
  
- 농산물 양허 유형은 관세철폐(즉시~20년)와 부분감축, TRQ, 양허제외 등 모두 11가지
  - 2013년 9월 1단계 협상에서 일반품목군(10년 이내 철폐), 민감품목군(10~20년 이내 철폐), 초민감품목군(TRQ, 부분감축, 양허제외)으로 합의. 2단계 협상은 각 품목군에 해당 농산물을 할당하는 과정이었음.
  - 일반품목은 즉시철폐와 5년 철폐, 그리고 10년 철폐 3가지. 민감품목은 15년 철폐와 20년 철폐이며, 20년 철폐는 20년 균등 감축과 11년차부터 감축, 그리고 13년차부터 감축으로 구분. 초민감품목은 5년간 10% 감축과 10년간 관세율 130%로 감축, TRQ 조건부 현행 관세 유지, 그리고 양허제외로 구성
  
- 농산물 양허 수준은 자유화율(20년 이내 철폐)이 품목 수 기준 64%(수입액 기준 42%), 양허제외 비율은 34%
  - 일반품목은 즉시철폐(13.4%), 5년 철폐(13.0%), 10년 철폐(10.2%).
  - 민감품목은 15년 철폐(12.5%), 20년 철폐(14.8%)
  - 초민감품목은 부분감축(5년간 10%: 0.7%, 10년간 130%로 감축: 0.9%), TRQ(0.4%), 양허제외(34%)
    - 기체결 한·미 FTA: 1.1%, 한·EU: 2.8%, 한·칠레: 29%

“

농산물 자유화 수준  
64%

”

표 1. 한중 FTA 우리나라 농축산물 양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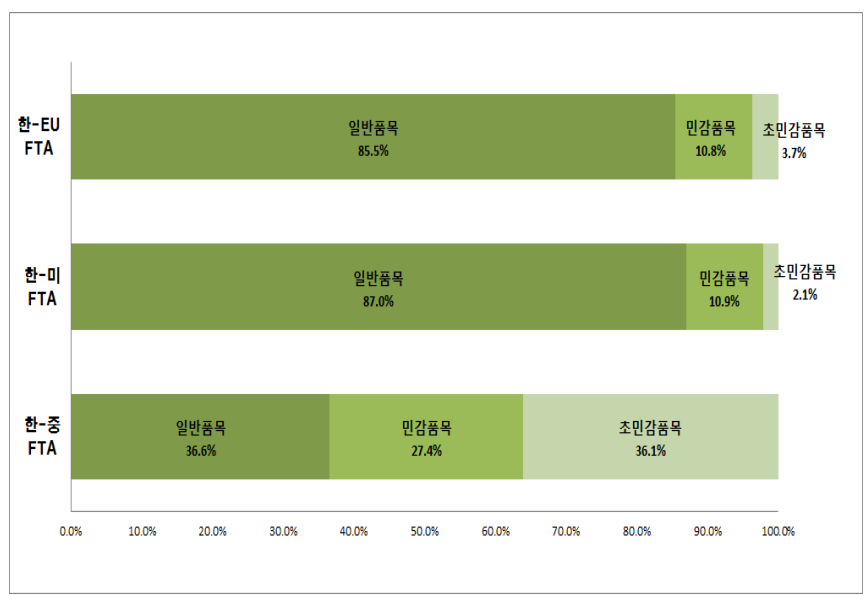
민감도	양허유형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일반 품목	즉시철폐	216 (13.4)	550 (37.9)	610 (42.1)
	5년 철폐	209 (13.0)	329 (22.7)	295 (20.4)
	10년 철폐	164 (10.2)	384 (26.4)	334 (23.1)
	소계	589 (36.6)	1263 (87.0)	1239 (85.5)
민감 품목	15년 철폐	202 (12.5)	148 (10.2)	146 (10.1)
	20년 철폐	239 (14.8)	10 (0.7)	10 (0.7)
	소계	441 (27.4)	158 (10.9)	156 (10.8)
초민감 품목	TRQ	7 (0.4)	15 (1.0)	14 (1.0)
	부분감축	26 (1.6)		
	양허제외	548 (34.0)	16 (1.1)	40 (2.8)
	소계	581 (36.1)	31 (2.1)	54 (3.7)
총합계		1,611 (100.0)	1452 (100.0)	1449 (100.0)

“

한미 FTA(97.9%)  
한EU FTA(96.3%)에  
비해 낮은 수준

”

그림 1. 기체결 FTA와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양허 현황 비교





## 2.2. 양허안 주요 내용

### □ 주요 신선 농산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양허 대상 1,611개(652개 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생산액을 발표하는 주요 품목 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 고추, 마늘, 양파와 무, 배추, 토마토, 딸기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 현재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저율관세할당량(TRQ) 조건부 현행관세율 유지

- 저율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TRQ)을 증량하는 대신 현행 관세율 유지
  - 대두(1만 톤), 참깨(2만4천 톤), 고구마전분(5천 톤), 팥(3천 톤), 맥아(1천 톤) 등

### □ 현행 양허세율이 288% 이상 높으면서 사료나 종자 등 국내 산업 원료용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은 10년간 관세율 130%로 인하(부분감축)

- 귀리(조분, 플레이크), 밀(조분, 팻리트), 옥수수(종자용), 스위트콘, 압, 매니옥, 토란 등

### □ 현행 양허세율이 50% 이내로 낮은 편이면서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은 5년간 관세율을 10% 인하(부분감축)

- 당면, 당류, 땅콩(조제저장), 들깨, 고사리(건조), 팥(조제저장), 송이버섯(냉동) 등
- 김치는 현행세율을 1년간 1%, 혼합조미료는 1년간 10% 각각 인하

“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

”

“

중국산 수입 비중에 따라 양허안 차등

”

- **국내 농업에 직접적 영향은 약하지만 현재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민감품목은 20년 철폐. 중국산 수입액이 적은 품목은 15년간 철폐**
  - 한약재, 식물성액즙, 도라지, 도토리, 기타과실, 비스킷, 양송이(조제저장), 목이버섯, 잎담배, 껌, 죽순, 맥주, 위스키, 고량주, 피넛버터, 건포도, 올리브, 데어리스프레드, 백삼조제품, 백합, 토마토케첩과 소스, 버찌(조제저장), 커피조제품, 두부, 대나무, 완두(냉동, 건조), 라임, 녹두, 카레, 살구(조제저장), 거위(신선), 고추냉이, 알부민 등은 20년 철폐
  - 감귤류 껍질, 박하, 개사료, 배합사료, 토마토페이스트, 미과, 겨자, 음료베이스, 레몬주스, 코코넛, 호프, 두리안과 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은 15년 철폐
- **주로 사료용과 종자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관세율이 낮아 일반품목으로 분류. 그 중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들은 5년 또는 10년 철폐, 무관세나 3% 이내의 저율관세 품목들은 즉시철폐**
  - 국수, 포도주, 꼬냑, 아몬드, 충전용 새솜털, 설탕박 등 박류, 베이커리제품, 기타 파스타, 혼합조제식료품, 커피(원두), 초콜릿, 젤라틴, 쇼트닝 등은 10년 철폐
  - 물, 멜론종자, 커피(볶음), 아마인유, 오렌지유, 코코아분말, 과실발효주, 캔디, 콜라베이스, 인스턴트면류 등은 5년 철폐
  - 박류(전분박, 대두박과 양조박, 면실유박 등), 대두(종자용), 기타 채유종실, 채소종자, 소와 돼지(번식용), 수수(기타), 알팔파, 면(코튼), 섬수모와 생사 등은 즉시철폐

표 2. 한중 FTA에서 품목별 양허 현황

양허유형		세관수	비중(%)	주요 품목	
일반 품목	즉시철폐	216	13.4	소(육우/젖소/기타), 오리(기타/번식용), 돼지(번식용), 대두(종자/분/조분), 사탕수수당밀(주정제조용), 돈지(기타), 가금지(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토마토 종자, 양모(기타/탈지), 박류(밀), 양배추 종자, 겨자씨, 생모피(기타), 야자유 기타, 당밀(기타/주정제조용), 라드유, 무 종자, 야자유(조유), 채소종자(기타), 호밀(기타) 등	
	5년 철폐	209	13.0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우황, 파스타(기타), 옥수수박, 식혜, 사향, 사탕무, 건빵, 밀(기타), 면실유(조유/정제유/기타), 대두유(정제유/조유), 사탕수수, 스파게티, 양조식초, 라면 등	
	10년 철폐	164	10.2	꼬냇, 흰포도주(기타), 코코넛(기타/말린 것/미탈각-내과피), 베이커리제품(기타), 샤프란, 스위트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소나무(분재용), 붉은포도주(기타), 보드카, 마요네스, 아몬드(탈각) 등	
소계		589	36.6		
민감 품목	20년 철폐	15년 철폐	202	12.5	해바라기씨유(정제유), 팜핵유(정제유), 카레, 올리브(설탕저장처리/조제저장처리/일시저장처리), 아이스크림(기타), 쇼트닝, 사과주, 바나나(기타/플랜틴), 망고스틴(신선/건조), 마가린(액상제외), 두리안(신선), 구아바(신선/건조),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망고(신선/건조), 팝콘(조제저장처리), 커피 크리머, 겨자(겨자의분/조분), 소시지(기타), 배합사료(축우/양돈/양계/어류/기타), 토마토페이스트,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냉동) 등
		11년차	2	0.1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기타과실(잼, 젤리, 마말레이드 기타)
		13년차	1	0.1	기타한약재(기타식물 - 향료, 의약품 등)
	20년 철폐	236	14.6	도라지(신선/냉장), 매니옥(냉동), 데어리 스프레드, 소주, 맥주, 낙화생유(조유/정제유/기타/그 분획물), 인삼음료, 기타채소(설탕저장처리),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콩(기타/설탕저장처리), 유장(기타/사료용) 등	
소계		441	27.4		
초민감 품목	TRQ	7	0.4	참깨, 팥(건조/기타), 대두(기타/콩나물용),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 맥아(볶지 않은 것), 전분(고구마의 것), 대두(기타/기타)	
	부분 감축 (평균)	20% 감축	11	0.7	김치(조제저장처리), 혼합조미료, 기타소오스, 팥(탈각/조제저장처리), 당면, 고사리(건조), 들깨, 당류(기타), 낙화생 기타(조제저장처리), 송이버섯(냉동), 기타 채소(조제저장처리)
		130%로 감축	15	0.9	매니옥(신선/냉장/기타/건조), 매니옥칩(건조), 매니옥 펠리트(건조), 밀(펠리트/분쇄물/조분), 스위트콘(기타/건조), 옥수수(종자용), 귀리(압착플레이크/분쇄물/조분/가공곡물), 압-디오스코레이종(기타), 토란-콜로카시아종(기타),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미종(기타)
	양허제외	548	34.0	쌀, 보리(겉보리/쌀보리), 팝콘용 옥수수, 감자(식용/냉동 건조/칩용/감자분), 쇠고기(신선/냉장/냉동/식용설육), 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냉장기타/돼지족/밀폐가공품), 닭고기(냉동가슴/냉동날개/냉장육/닭고기가공품), 분유(탈진지분유/연유/조제분유/혼합분유), 치즈(신선/가공/기타/체다), 버터, 꿀(천연/인조), 감귤류(오렌지/만다린/탈지/오렌지), 사과배포도, 키위, 호박, 고추(신선/냉장/건조/냉동), 마늘(신선/냉장/일시저장/건조/냉동), 양파(신선/냉장/건조/냉동), 인삼류(뿌리삼류, 기타가공품) 등	
소계		581	36.1		
총 합계		1,611	100.0		

“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중요  
농산물 양허 제외  
”

“  
한·중 FTA는 낮은 수준의 ‘FTA’  
”

### 2.3.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의 특징

- 주요 농산물 대부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낮은 수준의 FTA’
  - 주요 농축산물 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관세철폐 양허유형이 모두 11개로 미국(22개)이나 EU(21개)에 비해 단순화
  - 일반품목은 즉시철폐와 5년 철폐, 10년 철폐, 민감품목은 15년과 20년 철폐(3가지), 초민감품목은 부분감축(2가지)과 TRQ 조건부 현행관세 유지 및 양허제외
  - 주요 품목들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나머지 품목들은 양허 유형이 비교적 단순
- 중국의 관심품목 일부는 TRQ 증량이나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 제공
  - TRQ 증량 7개 품목, 5년간 부분감축 11개, 10년간 부분감축 15개
- 사료용과 종자용, 가공용 원료 등 일부 농산물에 한해 즉시철폐와 단기간 내 철폐로 양허
  - 즉시철폐 216개, 5년 철폐 209개, 10년 철폐 164개

### 3. 한·중 FTA 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 3.1. 한·중 FTA 협정 체결의 의미

-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대상국이고 우리나라는 중국 제3의 교역대상국임
  - 2013년 중국의 한국시장 수출액은 909억 달러로 홍콩을 제외하면 제3의 시장임. 수입액은 1,784억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음
  - 양국 간 교역액은 미국(5,106억 달러)과 일본(3,078억 달러)에 이어 3위였음
- 한·중 양국은 제조업 생산이 수직적 분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경합적인 관계로서 매년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하지만 농수산업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음
  - 양국 간 FTA 협상은 상호 민감분야인 한국의 농수산업과 중국의 제조업에 대해 민감성이 반영된 FTA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미국과 EU, 일본 등 거대경제권들이 중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농축산물의 경우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인 1,030개이고, 중국의 관심품목 33개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었음
  -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FTA로 인한 관세 인하 없이도 매년 증가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향후 FTA가 발효될 경우 시장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

양국은 상호 최대의 교역 대상국이나, 농업 부문 교역은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

”

FTA 이행으로  
중국시장 접근도  
확대

- 더욱이 최근 중국의 자체 농업기술 진보와 함께 우리나라 농업기술자들의 종자 및 재배기술 전수를 통해 농산물 품질이 향상되고 있어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품질경쟁력도 향상되고 있음

□ 중국의 농식품 시장도 FTA 이행에 따라 개방되는 만큼 세계 최대의 인구나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도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양허안에 의하면 채소종자와 잼, 젤리 등은 즉시철폐, 딸기(신선), 포도, 냉동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커피(볶음) 등은 10년 철폐
  -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 유망품목인 김치와 인스턴트면류, 커피조제품 등은 20년 철폐

- 중국 내 고소득 소비계층의 소비성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특히 자국산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한류의 세련된 이미지를 활용한 고품질 국산 농식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생산자 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특히 FTA 체결을 계기로 특혜관세를 활용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FTA 특혜관세의 필요조건은 바로 원산지 증명 발급이므로 양국 간 FTA 원산지 규정의 품목별 규정(Product Specific Rules: PSR)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 기존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를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발급 지원까지 확대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착륙을 위해 발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함

-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대두와 팥, 참깨 등은 물론 부분감축되는 들깨 등 발작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필요

- 또한 기존 FTA 대책들의 성과 평가와 효율성 심사를 통한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동안 정부의 FTA 국내 대책 지원금 집행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여 부정 수급과 중복 지급 및 유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한·중 FTA를 계기로 기존 한·칠레 FTA와 한·미 FTA 및 한·EU FTA까지 수립, 시행하던 협정별 국내 대책을 통폐합하여 ‘농가소득안정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특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재해보험과 연계하여 소득안정직불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복성을 줄이고 행정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농업인들도 한·중 FTA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대책에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료용과 종자, 가공용 등 일부 농산물만 관세철폐
- TRQ가 증량되는 품목들은 대부분 현행 관세율이 낮은 수준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발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필요

”

부록 1. 한중/미/EU/호/캐 FTA에서 주요 농산물 양허 비교

품목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한·호 FTA	한·캐 FTA
쌀	○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보리	○ 겉보리(324%), 쌀보리(299.7%)	양허제외	15년+ASG+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TRQ
	○ 맥아(269%), 맥주맥(513%)	TRQ/양허제외	15년+ASG+TRQ	15년+ASG+TRQ	15년+ASG+TRQ	12년+TRQ, 15년
옥수수	○ 팝콘용 옥수수(630%)	양허제외	7년+ASG	13년	18년	10년
	○ 종자용 옥수수(328%)	10년간 130%로 감축	5년	5년	18년	10년
대두	○ 식용 대두(487%)	현행관세유지 +TRQ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간장 및 대두박용은 즉시)
	○ 기타(487%)	양허제외 (채유·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즉시철폐(채유,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5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10년간 50% 감축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감자	○ 식용 감자(304%), 냉동·건조(27%)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냉동, 건조, 종자용 10년)
	○ 칩용 감자(304%)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8년)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15년)	계절관세(즉시/15년)
	○ 감자분(304%)	양허제외	10년+ASG	13년	양허제외	10년+ASG+TRQ
전분	○ 감자 전분(455%)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0년간 50% 감축	양허제외
	○ 매니옥 전분(455%), 고구마 전분 (241.2%)	양허제외	15년+ASG	15년	18년/10년간 50% 감축	11년
	○ 변성 전분(385.7%)	양허제외	12년+ASG+TRQ	12년+ASG+TRQ	15년	10년
쇠고기	○ 신선냉장·냉동(40%)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5년+ASG	15년+ASG, 양허제외
	○ 식용설육(18%)	양허제외	15년	15년	15년	11년
돼지고기	○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2014.1.1.(냉동 목살은 2016.1.1.)	10년	양허제외	13년+ASG
	○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양허제외	10년+ASG	10년+ASG	10년	13년+ASG
	○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양허제외	2014.1.1.	6년	7년/5년	5년/6년
	○ 냉동 기타(25%)	양허제외	2016.1.1.	5년	5년	5년+ASG
닭고기	○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양허제외	12년	13년	18년	양허제외
	○ 절단하지 않은 닭(18~20%)	양허제외	12년	12년	18년	11년
	○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양허제외	10년	10년	18년/10년	10년/양허제외



품목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한·호 FTA	한·캐 FTA
오리 고기	○ 냉장육(18%), 냉동육(18%)	양허제외	10년/12년	11년/14년	15년/18년	10년/양허제외
분유	○ 전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 탈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 조제분유(36%)	양허제외	10년 + TRQ	10년 + TRQ	15년 + TRQ	양허제외
	○ 혼합분유(36%)	양허제외	10년	10년	15년	양허제외
치즈	○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양허제외	15년 + TRQ	15년 + TRQ	20년/ 18년 + TRQ	양허제외
	○ 체다치즈(36%)	양허제외	10년 + TRQ	10년 + TRQ	13년 + TRQ	양허제외
꿀	○ 천연꿀(243%)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 인조꿀(243%)	양허제외	10년	10년	양허제외	10년
사료	○ 보조사료(50.6%)	20년	12년+TRQ	12년+TRQ	15년	10년+TRQ
	○ 사료용 옥수수(328%)	양허제외	즉시철폐	5년	18년	10년
감귤류 오렌지	○ 은주감귤(144%)	양허제외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 만다린, 탠저린(144%)	양허제외	15년	15년	계절관세	11년
	○ 오렌지(50%)	양허제외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양허제외
사과배 포도	○ 사과(45%)	양허제외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양허제외	후지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 배(45%)	양허제외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양허제외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 포도(45%)	양허제외	계절관세	계절관세	계절관세	양허제외
고추	○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 냉동고추(27%)	양허제외	15년	15년	양허제외	11년
마늘	○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 (360%)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 냉동마늘(27%)	양허제외	15년	15년	18년	11년
양파	○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 냉동 양파(27%)	양허제외	12년	12년	15년	11년
인삼류	○ 뿌리삼류 7개 세번(222.8~754.3%)	양허제외	18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 기타 인삼 가공품 등	양허제외	10년-15년+ASG	10년-15년+ASG	10-15년(차), 양허제외	10년-양허제외
면류	○ 라면(5%), 파스타(5%)	5년/10년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10년	즉시철폐

## 부록 2. 한중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상세)

### 가. 식량작물

품목	협상 결과
쌀	○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 제외
콩	○ 식용 콩(487%, 콩니물용, 기타): 현행관세유지+TRQ 10,000톤 -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 - 사료용: 양허제외
감자·감자분	○ 칩용감자(304%), 기타 식용(304%): 양허제외 - 칩용: 양허제외 - 종자용 감자(304%): 양허제외 - 냉동-건조(27%): 양허제외 ○ 감자분(304%): 양허제외
보리	○ 겉보리(324%), 쌀보리(299.7%): 양허제외 - 맥아(복지 않은 것 269%): 현행관세유지+TRQ 5,000톤 - 맥주맥(513%): 양허제외 - 보리 기타(299.7%): 양허제외
옥수수	○ 팝콘용(630%), 사료용(328%): 양허제외 - 종자용(328%): 130%까지 감축(10년 균등) - 옥수수 기타(328%): 양허제외
전분	○ 감자전분(455%), 옥수수전분(226%), 기타전분(800.3%): 양허제외 - 밀전분(50.9%), 매니옥전분(455%): 양허제외 - 고구마전분(241.2%): 현행관세유지+TRQ 5,000톤
기타	○ 고구마(385%, 냉동은 45%), 기타 서류(385%): 양허제외 - 발효주정(270%): 양허제외 - 팥 종자용(420.8%): 양허제외 - 팥 기타(420.8%): 현행관세유지+TRQ 3,000톤 - 메밀(256.1%): 양허제외 - 울무(800.3%)·기타가공곡물(800.3%): 양허제외

## 나. 육류

품목	협상 결과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한 8개 세번(40%): 양허제외</li> <li>○ 식용설육(족·꼬리·혀 등, 18%), 육과 식용설육(27%): 양허제외</li> </ul>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어깨살, 삼겹살, 기타(냉장/냉동, 22.5/25%): 양허제외</li> <li>○ 식용설육(18%): 양허제외</li> <li>○ 돼지고기 가공품(27~30%): 양허제외</li> <li>○ 소시지(18%): 양허제외 - 소시지 기타(30%): 15년 철폐</li> </ul>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닭 다라가슴날개(냉장/냉동, 18/20%): 양허제외</li> <li>○ 통닭(18~20%): 양허 제외, 기타 미절단 냉장닭고기(18%): 양허제외</li> <li>○ 닭고기 가공품(30%): 양허제외</li> <li>○ 삼계탕(30%): 양허제외</li> </ul>
계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란(41.6), 난황(27%): 양허제외</li> <li>○ 종란(27%): 양허제외</li> <li>○ 조란기타(27%): 양허제외</li> </ul>
기타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고기(18~27%): 양허제외</li> <li>○ 산양·면양고기(22.5%): 양허제외</li> <li>○ 칠면조 고기(18~27%): 20년 철폐</li> <li>○ 녹용 전지(20%): 양허제외</li> <li>○ 녹용 기타(20%): 양허제외</li> </ul>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마. 양념채소, 인삼, 특작

품목	협상 결과
고추	○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270%), 냉동고추(27%): 양허제외
마늘	○ 통마늘·깎마늘·건조마늘·일시저장처리(360%): 양허제외 ○ 냉동마늘(27%):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30%): 양허제외
양파	○ 신선 및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 냉동 양파(27%):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30%): 양허제외
생강	○ 신선·건조·기타 생강(377.3%): 양허제외 ○ 설탕저장처리(30%): 양허제외
파	○ 건조 파(30%), 쪽파(27%):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 쪽파(30%): 양허제외
인삼	○ 인삼류 23개 주요 품목 - 수삼(222.8%) 및 홍삼(754.3%)·백삼(222.8%) 등 뿌리삼류: 양허제외 - 홍삼분(754.3%)·백삼분(18%): 양허제외 - 홍삼엑스·홍삼엑스분(754.3%), 백삼엑스·백삼엑스분(20%): 양허제외 - 홍삼타블렛(754.3%)·백삼타블렛(18%): 양허제외 - 인삼잎줄기, 인삼종자, 홍삼차(754.3%): 양허제외 ○ 인삼차(8%): 20년 철폐 ○ 인삼음료(8%): 20년 철폐 - 추출한 올레오레진(백삼기타인삼 20%, 홍삼 754.3%): 양허제외
참깨, 참기름, 땅콩, 들깨, 들기름	○ 참깨(630%): 현행관세유지+TRQ(24,000톤) - 들깨(40%):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 참기름(630%), 들기름(36%): 양허제외 ○ 땅콩(230.5%):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63.9%):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 피넛버터(50%): 20년 철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바. 엽근채류

품목	협상 결과
당근	○ 신선 당근(30%), 냉동(27%), 건조(30%): 양허제외
무	○ 신선 무(30%), 건조(30%): 양허제외 ○ 신선 순무(27%): 양허제외
배추	○ 배추 신선, 기타(27%): 양허제외
양배추	○ 양배추 신선(27%), 양배추 건조(30%): 양허제외
기타	○ 연뿌리(설탕저장처리, 30%), 토란줄기(30%): 20년 철폐 ○ 고구마줄기(30%): 양허제외
기타채소	○ 더덕(신선 27%, 건조 30%), 건조한 도라지(8%): 양허제외 - 도라지 신선/냉장(27%): 20년 철폐 ○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냉동 30%, 설탕저장처리 15%): 15년 철폐 - 스위트콘(기타/건조 370%): 130%까지 감축(10년 균등) - 스위트콘(종자용 370%): 양허제외
기타채소 혼합물, 균질화한 채소	○ 채소류의 혼합물(건조/냉동 27%): 양허제외 - 채소류의 혼합물(27%): 20년 철폐 ○ 기타채소(냉동/일시저장처리 27%, 건조 30%): 양허제외 - 기타채소(조제저장처리 20%):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 균질화한 채소(유아용 퓨레콘, 20%): 20년 철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사. 가공식품

품목	협상 결과
김치	○ 김치(20%): 기존 관세의 10% 이내에서 감축
설탕	○ 기타당류(8%):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대두유, 옥수수유	○ 식품용 대두유(5%): 양허제외 - 바이오디젤용 대두유(5%): 5년 - 대두유와 그 분획물(8%): 10년 철폐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8%): 양허제외 - 옥수수유 기타/조유(5%): 5년 철폐
혼합조미료 및 소스	○ 혼합조미료(45%), 기타소스(45%) : 기존 관세의 10% 이내에서 감축
장류	○ 된장(8%), 간장(8%), 고추장(45%), 기타 장류(45%): 양허제외 ○ 춘장(8%): 20년 철폐
과자류, 빵류, 기타 식품류	○ 초콜릿류(8%): 5년 철폐 ○ 귀리빵, 파이와 케이크 등 빵류(8%), 건빵(8%): 5년 철폐 ○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5%), 베이커리제품기타(8%): 10년 철폐 - 미과(8%): 15년 철폐 ○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미제거(2%)): 10년 철폐 -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제거(2%)), 커피의 각과 피: 즉시철폐 - 볶은 커피(8%): 5년 철폐 - 커피크리머(8%): 15년 철폐 ○ 라면(5%): 5년 철폐 ○ 포도주(15%): 10년 철폐 - 기타 포도즙(30%): 양허제외 ○ 소주(30%): 20년 철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부록 3. 한중 FTA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개략)

〈 한중 FTA 중국 농산물 양허 결과 〉

양허유형		한·중 FTA		주요 품목
		세번수	%	
일반 품목	즉시	221	19.5	사료용 조제품, 잼과실제리, 채소 종자 등
	5년	65	5.7	단백질계 물질, 양모, 수모, 생사, 가축원피, 냉동 오렌지 주스, 볶지 않은 커피
	10년	439	38.8	사과배포도복숭아딸기(신선), 쇠고기 돼지 고가닭고기(냉동), 소시지, 볶은 커피, 물 등
<b>소계</b>		<b>725</b>	<b>64.1</b>	
민감 품목	15년	203	17.9	쇠고기돼지고가닭고기(신선), 파스타, 과일주스, 채소주스, 천연 꿀, 가공치즈 등
	20년	101	8.9	김치, 무알콜 음료, 기타 조미료, 인스턴트 면류, 커피 조제품, 곡분 조제품, 간장, 발효주, 냉동 오리고기 등
<b>소계</b>		<b>304</b>	<b>26.9</b>	
초민감 품목	부분감축	1	0.1	기타 조제식품(20%→18.4%)
	양허제외	101	8.9	쌀, 설탕, 건조 인삼, 밤(미탈각), 식물성 유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류 등
<b>소계</b>		<b>102</b>	<b>9.0</b>	
총합계		1,131	1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4년

-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정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인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

**KREI 농정포커스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11. 13.  
발 행 2014. 11. 13.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박성재,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한석호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mailto:dec5523@hanmail.net)

---

ISBN: 978-89-6013-645-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